

圖 書 目 錄 法 入 門 (第二回)

白 麟

四. 基本記入

基本記入(Main entry)이라함은 一群의 目錄中에서 主體가 되는 基本的인 記入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目錄組織體에 있어서 著者나 書名 또는 主題名等を 標目으로하여 여러種類의 記入을 만들게되는데 이들 記入中에서도 主動的인 役割을 하는것이 基本記入이다 이 主體가 되는 基本記入에 對하여 他는 補助的인 役割을 하지되는 것이므로 基本記入은 絕對的인 것인데 反하여 副出記入이나 分出記入은 必要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基本記入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著者를 그 標目으로하고 있으며 書名以下 註記事項에 이르기까지 詳細하게 記載하는 것이다 또한 이 記入에는 그 圖書에 對하여 二次的으로 만들어진 各種記入에 對한 副出表示를 해주게 되어있다. 이러한 副出表示(Tracing)는카드의 裏面이나 前面의 最下端에 記載하는데 이것은 副出指示는 後日 訂正이나 事故로 因하여 카드를 拔萃할 境遇에 散在되어있는 副出記入(카드)을 收集하는데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基本記入에 記載되는 事項은 目錄의 種類나 圖書館의 方針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다고 보나 一般的으로 著者, 書名, 出版事項, 對照事項, 註記, 여기에 請求番號를 記入하는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出版地 或은 出版者 圖版枚數等を 省略하는 곳도있다.

美國 國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의 印刷카드는 가장 詳細하게 記入된 一例인데 이 카드에는 上記한 事項은 勿論 單行本으로서 一著者の 著書라도 重要한 內容目次는 모두 記載하고있다.

基本記入 內容의 構成

記入의 內容의 構成은 請求番號를 除外한다면 標目과 記述의 二 概念으로 區分할수 있다.

첫째 標目的 役割은 目錄編成上 排列의 順序位置를 決定하는 同時에 檢索上의 手段이 된다.

둘째 記述은 한 作品을 完全히 確認 識別하는데 必要한 모든 事項의 記載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概念은 規則上으로도 記入上에서 嚴密히 區分되어야 한다.

- | | | | |
|----------------------|----------------|--------------------------|---------------|
| 1. 標目(Haeding) | 著者 書名 主題名 | } 記入體(Body of the entry) | } 記入
entry |
| 2. 記述
Description | 書名, 著者表示, 版次表示 | | |
| | 出版事項 | | |
| | 對照事項 | | |
| | 內容目次
一般註記 | | |

그러나 過去 우리나라의 東洋書 目錄規則이나 日本의 目錄規則에서 불배 規定上으로 標目과 記述의 區別됨이 없었고 또한 記入上에서도 어디까지가 標目에 屬하며 어디까지가 記述에 屬하는 것인지 그 限界가 明確치 못했던 것은 事實이다. 日本 目錄法 制定 委員會에서 A.L.A.의 1941年版 및 美國 國會圖書館 制定인 Descriptione Catalog Rule 1949年版을 引用한데서 부터 目錄法上 새로운 用語로서 記述이란 것이 問題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目錄規則上 標目에 關한 事項과 標目以外의 事項 即 記述에 關한 事項이 明確히 區別되게 된 것이다.

記述內容의 構成

- | | | |
|---------|--|-------|
| 1. 標目事項 | 書名
著者 表示
版次 表示 | } 第一項 |
| 2. 出版事項 | 出版地
出版者
出版年記 | |
| 3. 對照事項 | 卷, 페이지數表示
插圖表示
크기 叢書註記
一般註記
內容註記 | } 其他項 |

위의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記述의 內容記載는 다음과같은 事項을 書誌學的인 用語를 使用하여 簡單하고 明確하게 順序의으로 說明 記載하여줌으로서 그 圖書의 內容 및 外形의 知識을 理解하기 쉽게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1. 첫째 標題 事項으로서 그 圖書의 書名이 무엇이며 또한 著作者는 누구라

는것 그리고 몇번째 版이라는것을 表示하여주는 것이다.

2. 둘째 出版事項의 記載인데 이것은 그 圖書가 出版된 經緯에 關한 談話事項으로서 다시말하면 그 圖書가 出版된 處는 어디며 出版을 擔當한者는 누구라는것과 이 冊이 出版된 年代는 언제나하는 說明이다.

하나의 記入에서 볼때 위에서말한 標題事項이나 出版事項은 記述의 重要部分으로서 一般的으로 이것을 記入體(Body the entry)라고 부른다 이 두事項은 標題紙나 또는 版權紙에 나타나있는 그대로의 記入이며 同時에 그 圖書가 生産되기까지의 說明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標題紙에 나타나있는 事項이므로 이 두事項을 一括하여 標目다음에 第一項으로한 것이다.

3. 세째로서 對照事項인데 이것은 그 圖書의 外形의 形態에 關한 說明이다. 卽 그 圖書의 內容 부피는 어느程度라는것의 表示로서 卷 或은 페이지數 또한 插圖가 있는나 없느냐 그리고 크기는 어느程度라는것을 表示하여준다 兼해서 叢書註記等으로 構成되며 이것들의 記載는 第二項으로하여 順序的으로 記載한다.

4. 그다음 目錄者가 보는 見地에서 以上과 같은 事項外에도 그 圖書를 識別하는데 特히 註記하여줄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것은 얼마든 項을 比하여 一篇註記의 形式이나 內容目次로서 表示하여 준다. 以上과 같은 諸事項의 記載는 目錄記入上 한 圖書를 다른圖書와 嚴密히 區別하는데 必要한 要件으로서 뿐만아니라 書誌上 要求되는 極히 重要한 Information들의 記載인 것이다.

基本記入의 形式

저 자 명

청구
번호

서명; 부서명 저자표시, 판차, 출판지,

출판자, 출판기년.

권 혹은 페이지수, 삽화, 크기. (총서주기—————.)

일반주기 _____

내용목차 _____

1. 부출표시



基本記入의 標目

한 著作物에 있어서의 基本記入의 選定은 그 著作者가 個人이든 或은 團體이든 不問하고 그 著者의 姓名下에 基本記入하게 되어 있다.

目錄規則上 著者라함은 個人 또는 團體로서 特히 그 著作物의 知的인 內容에 對하여 主로 責任을 질수 있는者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著者로서 그 責任이 各己 나누어 져있을때는 標題紙에 나타나있는 最初의 한 사람의 이름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擇한다 그러나 萬一 여러 寄稿者에 依하여 執筆된 것으로서 이것이 特定한 編輯者에 依하여 編纂된것은 그 編者를 著者로 看做하여 編者名下 記入한다.

또한 特定한 出版物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 寄稿者에 依한 輯筆이고 또한 繼續的 或은 여러 卷으로 出版된 辭典 定期 刊行物 叢書等은 그 書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擇한다.

著者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하는 記入例

951 이 홍 직
01 李弘植

韓國古文化論攷 서울, 乙酉

文化社, 4287년.

276 P. 삼도. 21 cm. (韓國文化叢書 第14輯)

1. 역사—한국, 1. 서 명 (중서명)



團體名을 標目으로 擇한 例

目錄規則上 法人의 性格을 가지는 政府機關, 公共團體, 學會, 協會, 軍部, 其他 各種團體나 銀行, 會社, 財團, 商店等에서 刊行된 出版物에 對하여는 모두 그 機關이나 團體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採擇하게 되어 있다.

1. 政府機關에서 刊行된 出版物의 記入例

1. 政府機關에서 刊行된 出版物의 記入例

대한민국 문교부

문교행정통계일람, 단기 4291년 3월 31일 현재.

[서울, 문교부, 4291]

739 P. 25 cm.

1. 서 명



2. 公共團體에서 刊行된 出版物의 記入例

대한수리조합연합회
大韓水利組合聯合會

韓國土地改良事業十年史, 서울, 同聯合會,
4289.

642, 108 P. 圖版, 27 cm.

“土地改良關係法令”을 첨부

1. 서 명



書名을 基本記入의 標目으로한 例

百科辭典, 辭典

百科辭典이나 其他 辭典類는 그것이 編者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는限 書名下에 基本記入을 만들어준다. 어느것이든 基本記入의 標目으로 採擇되지 아니한것으로부터 副出記入을 만들어주어야하며 또한 必要에 따라서는 出版者의 이름으로도 副出記入을 만들어준다.

記 入 例

495.13 국어새사전, 국어국문학회 편 서울,
동아출판사, 1958.
1001 P. 삽도. 26 cm.

1. 사전—한국어 1. 국어국문학회, 편



叢 書

目錄規則上 叢書는 一般的으로 그 書名下에 基本記入하고 編者名으로서 副出記入을 만들어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叢書中에서도 그것이 編者나 出版者의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것은 編者나 出版者名下에 基本記入하고 叢書名으로 副出記入한다.

萬一 一定한 叢書名이없이 特定學會나 公共機關 或은 其他 團體의 名義下에 發行된것은 그學會나 團體의 이름下에 基本記入한다.

叢書取扱에 있어서 特히 留意 하여야 할것은 叢書名이 있다고하여 모두 叢書取扱을 하는것은 아니다.

叢書中에는 各冊의 內容構成에 있어서 各已 다른 數篇을 모아서 된것과 每冊이 特定 著者에 依한 獨立된 主題로된 두 種類가있다. 後者에있어서는 그것이 叢書로서는 그 形式과 모든 條件을 具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實質的으로 單行本과 同一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種類의 叢書는 單行本과 同一한 取扱을하여 基本記入 카드에 叢書註記를 하여주고 叢書名으로서 副出記入을 만들어주면 된다.

〔基本記入例 1. 參照〕

그리고 思想叢書와 같이 叢書의 每冊이 各已 다른 著者의 著作物을 數篇모아 하나의 冊으로 한것은 어디까지나 叢書로 取扱하여 叢書記入을 만들어주어야한다.

例 參照

叢書基本記入例

082

사 상 총 서
思想叢書, 國民思想指導院 編. [서울]

同 院, 4285—

V. 18 cm.

내용—V. 1 國史上으로 본 우리指導理念, 李丙潑 著. 中國古代政治思想, 金庠基 著.—V. 2 헤겔과 맑스 (唯物辯證法批判) 金基錫 著. 唯物史觀의 社會學的의 批判, 嚴堯燮 著. 共產主義理論批判, 金信欽 著. —V. 3 新家族道義論, 金斗憲 著. 西洋近世思想의 特徵, 金基錫 著. 4 國民思想과 時調文學, 李泰極 著. —V. 5 正敎와 邪教, 嚴堯燮 著.



다음 카트를 보라

合綴本の 記入

合綴本이라함은 同一 或은 各各 다른 著者의 둘以上の 作品을 하나로 合冊한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合綴本中에는 出版當時에 合本되어 나온것과 또한 單獨 出版된것을 後에와서 合冊製本한 두 種類가있다 이러한 合綴本은 外形上으로 볼때에는 하나의 圖書로 되어있지만 事實上 各已 獨立된 著者로서 各各 別個의 標題紙를 가지고 있을뿐 만아니라 페이지數도 따로 되어있다. 그러나 外形上으로 보아 하나의 圖書이므로 請求番號가 同一하게되고 따라서 書架上에 꼽히는 場所는 한 곳이겠지만 各已 獨立된 著書로 取扱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하여 分類는 前篇의 內容에 따라하고 目錄上 記入은 各已 獨立된 記入을 만드려 주어야한다. 小野則秋氏는 그의 著書 圖書目錄의 作法에서 “合綴書도 叢書, 全集, 論文集과같이 分出記入한다”고 말하고있으나 내가 보는바로서는 이것은 分出記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各篇에 對하여 獨立的인 基本記入인 것

이다. 왜냐하면 合綴本은 그것이 外形上으로 볼때는 한冊이지만 內容上 或은 書誌學上으로보아 完全한 두冊인 것이다. 그러므로 分類上으로는 分割되지만 記入上으로는 完全한 두개의 基本記入 形式으로서 다만 合綴되고 있다는것은 參照하기 爲하여 合綴註記를 兼한것이다.

合綴本の記入例

1.

前篇

다니구지 도모헤이
谷口 知平

戶籍法, 東京, 有斐閣, 昭和32(1957)
198, 4P. 21cm. (法律學全集, 25)

合綴: 不動產登記法, 幾代通 著
東京, 有斐閣, 昭和32(1957)

1. 호적법



2.

後篇

349.5348 이구요 도오루
幾代通

不動產登記法, 東京, 有斐閣,
昭和32(1957)

185, 3P. 21cm (法律學全集, 25)

合綴: 戶籍法, 谷口知平 著. 東京, 有斐閣,
昭和32(1957)

1. 부동산 1. 서명



逐次刊行書 및 定期刊行書

一般的으로 逐次刊行書라하는것은 部分的으로 繼續刊行되는 出版物로서 一定한 期間을 두지않고 無限히 逐次的으로 刊行되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包含되는 出版物의 範圍는 相當히 넓은것이며 新聞, 雜誌, 年鑑類는 勿論 報告書, 年報, 會報, 硏究論文, 또는 前版에 繼續追加되는 附錄, 加除式, 出版物에對한 그 追錄, 個個部分이 一定한 全集書名下에 때때로 繼續해서 나가고 있는 全集 叢書等은 모두 逐次刊行書인 것이다.

그러나 本章에서 말하고자하는것은 逐次刊行書中에서도 特히 定期刊行書만 에 對하여 그 限界와 記入方法에 關하여 說明키로하였다. 첫째 定期刊行書라 함은 用語自體로서도 그 概念을 明白히 하고있지만 이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한다면 逐次刊行書中에서도 各卷이나 Parts가 獨立的인 單行本의 形式이 아니고 또한 거기에 실린 論文이나 記事가 여러 寄稿者에 著된것으로서 이것이 一定한 書名아래 規則的인 期間을두고 卷號를 따라 逐次的으로 나오는 刊行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刊, 週刊, 季刊, 月刊, 半月刊, 年刊等, 繼續的 規則的으로 나오는 新聞, 雜誌, 年鑑等이다.

그러나 學會나 團體에 依하여 刊行되는 會報, 硏究論文, 報告書等은 目錄規則上 定期刊行書에서는 除外된다. (筆者 서울 大學校 中央 圖書館 司書長)

張 一 世 著

學校圖書館 運營法

定價 1,000圓

發行: 學校圖書 刊行會 서울 特別市 鍾路區 苑南洞 30

總販: 乙 文 堂 서울 特別市 鍾路區 仁寺洞 119
電話 ③ 5859 ③ 8985